

민간조사제 도입의 검토

- 합리적인 개인정보처리를 중심으로 -

신관우

본 논문은 민간조사과정에서 수집·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법안을 비교하여 업무방위와 조사과정을 살펴보고 민간조사와 개인정보보호법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민간조사업자가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동의 문제, 개인정보 수집의 정도, 정보주체의 지위와 권리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민간조사의 합리적인 개인정보처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민간조사에서 합리적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민간조사업자가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동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 민간조사업자의 동의관련 설명의무조항과 계약서, 동의서, 설명을 위해 작성된 서식은 반드시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교부할 수 있는 조항이 민간조사관련법에 신설되어야 한다. 둘째, 계약 체결 이후 기초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자와 대상물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관련자를 특정하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 방법을 설정하는 조사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의뢰인에게 고지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셋째, 민간조사업자는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이나 조사완료가 된 경우에 조사 사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3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 사실 확인을 한 경우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의뢰인에게 제출될 수 있다. 하지만 제3자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요구권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권을 행사하면 민간조사업자는 의뢰인에게 조사내용제출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해지고 민간조사제도 역시 유명무실해진다. 따라서 민간조사업자가 조사내용 제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삭제요구권과 처리정지요구권의 행사를 일시 정지시키는 근거의 마련도 필요하다.

주제어: 민간조사, 민간조사업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민간조사절차

1. 서론

과학기술과 사회체계의 변화는 민·형사상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고 특별법의 양산을 유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설정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는 특정인, 특정 사항 그리고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집단 사이에 분쟁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분쟁 해결은 형사법 영역의 경우에 국가가 개입하여 형사절차를 통해 처리하거나 민사상 분쟁은 당사자가 다투는 사항에 대해서 국가가 규범적 판단을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모든 범죄를

국가가 조사해서 진실을 규명하는데 사실상의 한계가 있고 당사자가 입증하기 곤란한 전문적 영역의 보호법익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인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심부름센터 또는 흥신소 등과 같이 사실상 조사행위를 행하는 민간업자들이 양산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민간주체에 의한 음성적 조사활동은 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청부, 미행·도청·위치정보추적 등 사생활 조사, 불법적인 전산망 조회, 불법 채권 추심¹⁾’에 대한 의뢰를 받아 운영되고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불법적 조사행위에 대하여 관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고 발생하는 불법의 규모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음성적 조사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검토된 민간조사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민간조사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외국의 민간조사제도의 사례를 소개하거나 그간 발의된 민간조사관련 법안에²⁾ 대한 논의가 검토되었다(김원중, 2006: 62; 한상철, 2009: 98; 안영규, 2010: 96-102; 손상철, 2011: 141-158; 조성구·김태민, 2012: 안동현, 2012: 80; 이하섭, 2012: 272; 박동균·김태민, 2012: 108). 현재 민간조사업에 대한 운영요건, 의무, 벌칙 등 다양한 규제 사항을 통해 사실상의 조사업체들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조사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심의 중에 있다³⁾. 민간조사관련 법안에서 민간조사업자는 의뢰인과 계약에 따라 인적·물적 소재 조사, 피해 조사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조사는 은밀하고 광범위한 사실관계의 수집과 이를 가공하여 생산되는 정보를 전제로 하고 있어 민간조사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조성구 외, 2012: 265). 개인정보침해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만 피해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보이콧 등으로 인한 확대 손해가 유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구제도 곤란한 특성이 있다(고형석, 2011: 280-281).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개인정보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를 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김준우·소재선, 2012: 45)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법으로 시행되고 있고 민간조사 활동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의 침해는 2009년 35,167건, 2010년 54,832건, 2011년 122,215건, 2012년 166,801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22).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가 개인정보 수집단계에서부터 높아졌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61201031127295001>

2) 민간조사관련 법안들은 철회되거나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3) 윤계옥의원 등 10인의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송영근의원 등 15인의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4)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

5) 자신에 관한 정보가 누구에게 언제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법안을 비교하여 업무범위와 조사과정을 살펴보고 민간 조사와 개인정보보호법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민간조사업자가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동의 문제와 개인정보 수집의 정도 그리고 정보주체의 지위와 권리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민간조사과정에서 수집·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민간조사제도의 고찰

1. 민간조사제 도입과 업무범위

민간조사는 개인 또는 단체의 의뢰를 받고 사적 주체에 의하여 사실을 조사하는 치안서비스의 일종으로 2005년부터 발의된 입법안의 업무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화재사고와 사이버범죄·기업회계부정 등 각종 범죄 및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범위를 구체화하거나⁶⁾, 법원 등에 사용될 증거의 확보⁷⁾,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으로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⁸⁾과 같은 형사절차의 증거자료를 조사하는 준사법적 기능도 포함하는 입법화가 추진되었고, 소제가 불분명한 인적·물적 대상에 대한 소재파악 조사는⁹⁾ 각 법률안에서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화의 추진은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¹⁰⁾ 법안 자체가 철회되었고¹¹⁾, 현재 민간조사의 제도적 도입을 위하여 윤재옥의원 등 10인(의안번호 1902389)과 송영근의원 등 15인(의안번호 1904137)이 각각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민간보안산업법안’)과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간조사업법안’)을 발의하여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6) 의안번호 172591, 174047, 174188.
 7) 의안번호 172591, 174047.
 8) 의안번호 1803727, 1804313, 1804521.
 9) 의안번호 172591, 174047, 174188, 1801001, 1803727, 1804313, 1804521, 1902389, 1904137.
 10) 의안번호 1804521, 1801001, 174188, 172591.
 11) 의안번호 1804313, 1803727, 174047.

<표 1> 민간조사 업무범위의 구분

민간보안산업법안	구분	민간조사업법안
가족의 의뢰에 의하여 실종아동등 ¹²⁾ ·가출인 ¹³⁾ ·실종자에 ¹⁴⁾ 대한 소재파악과 관련된 조사	인적 소재 조사	미야 ⁵⁾ , 가출인, 실종자, 소재 불명인 불법행위자에 ¹⁶⁾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조사
도난 ¹⁷⁾ , 분실 ¹⁸⁾ , 소재가 불명한 물건 ¹⁹⁾ 소재확인과 관련된 조사	물적 소재 조사	도난, 분실, 도피자산의 ²⁰⁾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조사
의뢰인의 피해 확인 및 그 원인에 관한 사실 조사 ²¹⁾	피해조사	의뢰인의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
법안 제42조에서 민간조사 업무제한의 예외사유로서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하는 행위는 민간조사업무 가능’	변호 관련 사건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

* 자료: 민간보안산업법안(제2조)과 민간조사업법안(제3조) 제구성.

- 12) 경찰청의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에서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이거나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을 의미한다.
- 13) 경찰청의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에서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4세 이상의 사람으로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가출청소년”이라 하고 그 외는 “가출성인”이라 명시하고 있다.
- 14) 실종자를 민법 제27조에 의하여 유추하여 보면 소재해야 할 장소에 없는 부재자로 볼 수 있으며, 민법 제27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나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15) 일반적으로 길이나 집을 잃고 헤매는 아이를 지칭한다.
- 16) 소재 불명의 불법행위자는 지명수배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범죄수사규칙 제173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1.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180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다만, 긴급체포 등과 같은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명수배를 한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발부받지 못한 경우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지명통보의 대상인 자로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다만, 기소 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
- 17) 도난이란 일반적 의미는 ‘도둑을 맞는 재산’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를 규범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형법상 ‘절도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인 타인이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과 동력 등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인해 그 타인이 부담하게 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 18) 분실이란 타인이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과 동력 등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이외에 과실로 재물의 점유가 이탈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 19) 소제가 불분명한 물건이란 도난의 결과로 발생하는 도품과 분실로 인한 유실을 중 현재의 소제를 파악하기 곤란한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과 동력 등 재물이라고 볼 수 있다.
- 20)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재산국외도피의 죄’에서는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1)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하여 전제되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같은 인신권(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 금지(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의 무체재산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인적·물적 소재 조사, 의뢰인의 피해 조사, 변호관련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인적 소재 파악의 대상은 실종아동 등 또는 미아, 가출인, 실종자를 양 법안에서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민간조사업법안의 경우 소재 불명의 불법행위자를 대상으로 하여 좀 더 업무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있다. 물적 소재 조사도 다만, 분실, 소재 불명의 물건에 대하여 유사하나 민간조사업법안에서 도파자산의 추적을 포함시켜 역시 업무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있다. 그 외 양법안에서 헌법과 개별 법률에서 명시하는 피해 또는 침해에 대한 광범위한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조사와 변호사가 수임한 민·형사상 다양한 분쟁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 민간조사의 조사 과정

민간조사의 절차를 <표 2>와 같이 조사이전의 단계, 조사진행 및 종료 단계로 구분하여 민간보안 산업법안과 민간조사법안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민간조사 과정의 구분

구분	조사 이전 단계	조사 진행 / 종료 단계
민간보안 산업법안 ²²⁾	·의뢰인 적격 여부 확인 ·수임 업무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 ·수임계약 체결시 내용 기재 서면 교부 ·수임부 작성 / 보관	·수임한 민간조사업무의 성실한 수행 ·의뢰인 요청시 조사내용의 서면 제출 ·민간조사원의 수집·조사 제한 ·업무 완료시 조사내용의 서면 제출
민간조사업 법안 ²³⁾	·의뢰인의 적격 여부 확인 ·의뢰인 본인/대리인 여부 확인 ·부당한 사건 유치의 금지 ·의뢰 사건의 사건부 작성 / 보관 ·의뢰인 확인 사건의 사건부 기재	·의뢰 업무의 성실한 수행 ·의뢰인의 요청시 조사내용의 서면 제출 ·민간조사업자의 수집·조사 제한 ·조사대상에게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 사용금지 및 조사자료 제공/답변 강요 금지 ·업무범위 초과행위 금지 ·법인의 업무집행방법 준수 ·업무 완료시 조사내용의 서면 제출

※ 자료: 민간보안산업법안(제28조)과 민간조사업법안(제3장) 재구성.

권(대한민국 헌법 제22조 제2항),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특허권(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제1항),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대한민국 헌법 제122조),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의 금지(대한민국 헌법 제126조)와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대한민국 헌법 제23조)을 근거로 그에 대한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그 가치를 보전할 권리나 이익과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로 볼 수 있다.
22) 의뢰인 적격 여부 확인(민간보안산업법안 제2조제7호); 수임 업무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민간보안산업법안 제24조 제1항); 수임계약 체결시 내용 기재 서면 교부(민간보안산업법안 제24조 제8항); 수임부 작성/보관(민간보안산업법안 제24조 제8항); 수임한 민간조사업무의 성실한 수행(민간보안산업법안 제24조 제1항); 의뢰인 요청시 조사내용의 서면 제출(민간보안산업법안 제24조 제9항); 민간조사원의 수집·조사 제한(민간보안산업

‘조사이전의 단계’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의뢰인 여부’ 확인²⁴⁾, 수임 업무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²⁵⁾·부당한 사건 유치의 금지²⁶⁾, 수임부²⁷⁾ 또는 사건부 작성/보관²⁸⁾ 등에 대하여 법안 모두 유사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민간보안산업법안 제24조 제8항에서 수임계약 체결 시 내용 기재 서면 교부와 민간조사업법안 제25조에서 의뢰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사진행 및 종료단계’에 대해서 법안 모두 민간조사업무의 성실한 수행의 의무²⁹⁾, 의뢰인 요청시 또는 업무 완료시 조사내용의 서면 제출³⁰⁾, 민간조사원의 수집·조사 제한³¹⁾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민간조사업법안에서 조사대상에게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 사용 금지 및 조사 자료 제공·답변 강요 금지(법안 제19조 제5항), 업무범위초과행위 금지(법안 제21조), 법인의 업무집행 방법 준수(법안 제30조)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보면 민간조사관련 법안에서 대부분 조사절차에 대하여 일반적 의무 규정을 통해 제한적인 절차를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조사방법에 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3. 개인정보보호법과 민간조사

개인보호를 규율하는 법률체계는 기본법을 중심으로 공적 분야와 민간 분야를 통합하여 감독기구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유지를 지도·감독하면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는 ‘정부규제방식’³²⁾ 공공영역만 기본법을 제정하고 필요한 분야별로 개별법을 제정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민간의

법안 제28조 제1항); 업무 완료시 조사내용의 서면 제출(민간보안산업법안 제24조 제9항).
23) 의뢰인의 적격 여부 확인(민간조사업법안 제2조 제4호); 의뢰인 본인/대리인 여부 확인(민간조사업법안 제25조); 부당한 사건 유치의 금지(민간조사업법안 제24조); 의뢰 사건의 사건부 작성 / 보관(민간조사업법안 제22조); 의뢰인 확인 사건의 사건부 기재(민간조사업법안 제25조); 의뢰 업무의 성실한 수행(민간조사업법안 제19조 제1항); 의뢰인의 요청시 조사내용의 서면 제출(민간조사업법안 제19조 제3항); 민간조사업자의 수집·조사 제한(민간조사업법안 제20조); 조사대상에게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 사용 금지 및 조사 자료 제공/답변 강요 금지(민간조사업법안 제19조 제5항); 업무범위초과행위 금지(민간조사업법안 제21조); 법인의 업무집행방법 준수(민간조사업법안 제30조); 업무 완료시 조사내용의 서면 제출(민간조사업법안 제19조 제19항).
24) 민간보안산업법안 제2조제7호· 민간조사업법안 제2조 제4호.
25) 민간보안산업법안 제24조 제1항.
26) 민간조사업법안법안 제24조.
27) 민간보안산업법안 제24조 제8항.
28) 민간조사업법안법안 제22조.
29) 민간보안산업법안 제24조 제1항· 민간조사업법안법안 제19조 제1항.
30) 민간보안산업법안 제24조 제9항· 민간조사업법안법안 제19조 제3항.
31) 민간보안산업법안 제28조 제1항· 민간조사업법안법안 제20조.
32)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정부규제방식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①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에서 개인정보처리는 동의의 원칙, 목적제한의 원칙, 상용성의 원칙, 정확성의 원칙, 보존필요성의 원칙, 데이터 주체의 권리의 원칙, 안전보장조치의 원칙에 의한다. ② 프랑스의 정보처리, 정보화 및 개인의 자유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위법수집금지의 원칙, 데이터처리거절권의 원칙, 사전통지의 원칙, 보존필요성의 원칙, 안전보호조치의 원칙, 동의적 정보수집제한의 원칙, 민감정보 금

자율적 지침에 의한 ‘자율규제방식’으로³³⁾ 구분된다(윤중수, 2009: 195-198; 김준우·소재선, 2012: 50-58).

개인정보 침해도구의 예측불가능성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공공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다(백윤철, 2010: 589; 정준현, 2010: 566; 길준규, 2012: 215).

<표 3> 개인정보처리의 원칙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식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민간조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이성용, 2012: 281)로서³⁴⁾ 의뢰인이³⁵⁾ 제

지의 원칙에 의한다. ③ 독일 연방데이터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에서 개인정보는 소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법률 또는 동의에 의하여 데이터수집/처리/이용 허용, 직접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정확성의 원칙, 소거의 원칙에 의하고 저널리즘 목적인 경우는 원칙 적용을 제외한다. ④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기 위해 이용 목적을 “가능한 한” 특정해야 하며, 이러한 이용목적은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기 위해서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예외적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규정”에서 개인정보 취급원칙에 의해 원칙적으로 본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 33) 미국은 자율규제방식에 의하여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을 통해 연방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만 정보를 수집/보유하도록 하고 가능한 본인으로부터 수집할 것을 규정하고 서면요청이나 사전 서명동의를 의하지 않고는 개인정보를 게시(disclose)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통계목적이나, 연방정부의 목적범위 내의 통상적인 사용, 아카이빙 목적, 법집행목적, 의뢰조사목적 기타 행정목적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민간분야의 개별법으로는 Fair Credit Reporting Act of 1970, Education Records Act, Video Privacy Protection Act of 1988, 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 of 1991, Children’s Privacy Online Protection Act of 1998, Cable Communication Policy Act of 1984 등이 있고 이러한 특별법이 없는 분야는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다.
- 34) 개인정보를 저장·입력하는데 전산자료를 활용하고 순수한 수기문서 형식으로 고객명 등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 또는 배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하는 정보주체의³⁶⁾ 개인정보를³⁷⁾ 기초로 인적·물적 소재 파악과 관련된 조사(민간보안산업법안 제2조 제3호 가목·나목; 민간조사법안 제3조 제1호·제2호), 의뢰인의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민간보안산업법안 제2조 제3호 다목; 민간조사법안 제3조 제3호) 그리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민간조사법안 제3조 제4호)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한다³⁸⁾.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인 민간조사업자는 <표 3>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의 원칙을 유의하여야 한다.

III. 민간조사와 개인정보처리

1. 민간조사의 임의조사와 개인정보보호법의 동의

민간조사는 인적·물적 소재파악 조사와 의뢰인의 피해 확인 그리고 변호 관련 사건에 관하여 의뢰인과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범죄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서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인 수사외³⁹⁾ 구분되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에 대하여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나 찾아보는 사실 확인을 통한 임의조사에 한정된다. 이를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민간조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적 조사방법을 통해 관련 정보를 처리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35) 의뢰인은 인적 소재 파악에 대한 조사의 경우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고, 물적 소재 파악 조사나 피해사실 조사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자신이 될 수 있다.
- 36)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의미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3호).
- 37)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38)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처리”라고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
- 39) 수사는 범죄 혐의를 전제로 검사, 일방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기관으로서 주관적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에 의해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객관적 혐의가 있을 경우에 사법부의 통제에 의한 강제수사로 구분하여 시행된다.

<표 4> 개인정보보호법의 '동의' 구분

순번	조문	동의 구분	내용	비고
①	제15조 제1항	통상 동의	개인정보 수집·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	고지 의무 ⁴⁰⁾
②	제17조 제1항	통상 동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 포함)	고지 의무 ⁴¹⁾
③	제17조 제3항	통상 동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	고지 의무 ⁴²⁾
④	제22조 제3항	통상 동의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고지 의무 ⁴³⁾
⑤	제22조 제5항	통상 동의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	최소정보 수집가능 ⁴⁴⁾
⑥	제18조 제2항	별도 동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제외)	고지 의무 ⁴⁵⁾
⑦	제19조	별도 동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⑧	제23조	별도 동의	민감정보 ⁴⁶⁾ 처리(제15조제17조의 고지와 별도 동의 필요)	
⑨	제24조 제1항	별도 동의	고유식별정보 ⁴⁷⁾ 처리(제15조제17조의 고지와 별도 동의 필요)	

* 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4조 재구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는 <표 4>와 같이 '통상 동의'와 '별도 동의'로 구분된다. 정보주체가 동의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는 '통상 동의'는 수집·이용 동의(제15조 제1항 제1호), 제3자 제공 동의(제17조 제1항 제1호)⁴⁸⁾, 국외 제3자 제공 동의(제17조 제3항), 마케팅 목적 처리 동의(제22조 제3항), 법정대리인의 동의(제22조 제5항) 등이 있으며, 정보주체가 좀 더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동의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동의'는 목적외 이용·제공 동의(제18조 제2항 제1호), 민감정보 처리 동의(제23조 제1항 제1호),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제24조 제1항 제1호) 등이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해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포괄동의를 금지하고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1항; 행정안전부, 2011: 132),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보주체들은 동의와 관련된 사항을 읽지 않고 행하는 형식적 사전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김준우·소재선, 2012: 72).

동의를 방법은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표 4> 개인정보보호법의 '동의' 구분의 순번 ①⁴⁹⁾, ②⁵⁰⁾, ⑧⁵¹⁾, ⑨⁵²⁾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

시하고 있다.
 46)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47)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서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48) 제3자 제공이란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수기로 작성된 개인정보문서를 전달,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전달,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접속권한을 허용하여 열람복사가 가능하게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김재광, 2012: 106).
 49)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50)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51)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호.

40)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에서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이라 명시하고 있다.
 41)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에서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이라 명시하고 있다.
 42)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3항에서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이라 명시하고 있다.
 43)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44)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45)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항에서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이라 명

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하고,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표 4> 개인정보보호법의 '동의' 구분의 순번 ④⁵³⁾, ⑥⁵⁴⁾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금지되고(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4항),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2항).

<표 5> 개인정보수집 '동의' 관련 벌칙

위반행위	벌칙
·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2항, 제22조 제4항, 제22조 제5항 위반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23조, 제24조 위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제9장 벌칙.

2. 민간조사 과정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처리자인 민간조사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이 경우 동의를 받을 때에는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에 대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이러한 고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52)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호.

53)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3항.

54)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표 6>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요건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는 <표 6>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김재광, 2012: 105),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1항·동법 제3조 제1항⁵⁵⁾).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①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③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⁵⁶⁾ 사실 등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1항).

<표 7> 개인정보수집 관련 벌칙

위반행위	벌칙
제15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20조 제1항 위반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제9장 벌칙.

3. 정보주체의 지위와 권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실현할 수 있게 하고 있다(김재광, 2012: 113).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서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③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④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⑤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

55) OECD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서 이용목적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요건이나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김재광, 2012: 105).

56)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을 권리를 가지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권(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제2항),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구권(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제1항·제2항),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권(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보장된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동조 제3항).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제2항).

그리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표 8>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관련 벌칙

위반행위	벌칙
제35조 제3항, 제36조 제2항, 제37조 제4항 위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5조 제3항·제4항, 제36조 제2항·제4항, 제37조 제3항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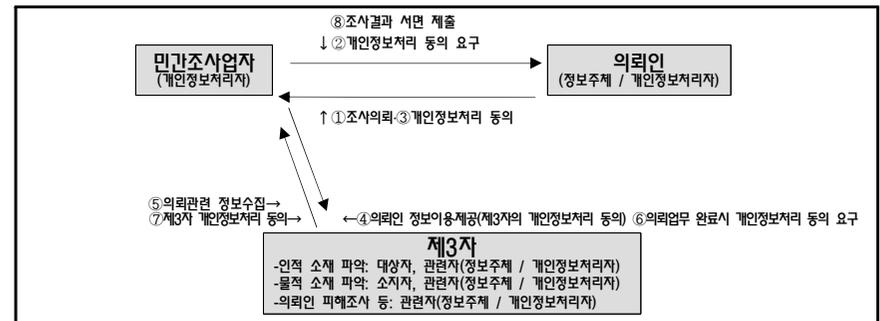
※ 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제9장 벌칙.

IV. 민간조사의 합리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안

1. 민간조사과정에서 '사전적' 동의 방법의 구체화

민간조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표 9> 민간조사의 당사자와 제3자 관계를 통해 살펴보면, ① 의뢰인의 조사의뢰에 의하여 ② 민간조사업자는 의뢰인의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동의를 요구하게 되고 ③ 의뢰인 동의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④ 민간조사업자는 업무범위내에서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는 과정을 거쳐 조사를 실시하여⁵⁷⁾, ⑤ 의뢰 목적관련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⑥ 민간조사의 의뢰 업무를 완료한 민간조사업자는 제3자(인적 소재 파악의 대상자, 물적 소재 파악의 물건 소지자, 의뢰인 피해조사의 관련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를 요구하고, ⑦ 제3자의 동의를 받아⁵⁸⁾ ⑧ 의뢰인에게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된다⁵⁹⁾.

<표 9> 민간조사의 당사자와 제3자 관계



※ 자료: 민간조사업 법안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동의 규정을 통해 절차를 도식화함.

민간조사관련 법안에서는 동의와 관련하여 ㉠ 쌍방대리의 예외적인 허용요건으로 동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민간보안산업법안 제24조 제5항⁶⁰⁾· 민간조사업법안 제19조 제2항⁶¹⁾), ㉡ 민간조사업자가 성인가출인의 소재 조사를 한 경우에 성인가출인 자신의 동의에 의하여 조사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민간보안산업법안 제24조 제9항⁶²⁾). 또한 ㉢ 비밀누설금지의 예외로서 의뢰인의

57) 제3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해 동의를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58) 이 경우 제3자는 정보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고,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의뢰인은 제3자가 된다.

59) 의뢰인 요구시 조사내용을 서면 제출 할 수 있다.

60) 제24조(민간조사업자의 의무) ⑤ 민간조사업자는 수입한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의 상대방으로부터 동일한 사건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1) 제19조(성실의무 등) ② 민간조사업자는 당사자 일방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사건에 관하여는 상대방을 위하여 조사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의가 있는 경우에 민간조사업자 등이 타인에게 이용·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간조사업법안 제 29조 제1항⁶³⁾).

㉠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그 목적 범위에서 이용 그리고 제3자 제공을 위한 통상의 동의로 이해된다. ㉡의 경우에 민간조사업자가 성인가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의뢰인(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과 제17조 제1항에 의한 동의로 볼 수 있으나, 물적 소재 파악 조사의 대상인 물건을 정당한 권한에 의해 소지한 자도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동의를 받아 조사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안에서 배제된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요건으로서의 동의를 의미하나, 반대 해석적 측면에서 보면 의뢰인의 동의가 있다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민간조사업자가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의 방법을 법안에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 범위’의 설정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와 같은 ‘통상 동의’와 정당한 의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집·이용되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민간조사 진행과정에서 수집될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민감정보 처리를 위한 ‘별도 동의’로 한정하여 계약 체결시에 ‘개별적 동의를 강제(김준우·소재선, 2012: 73)’하도록 민간조사관련 법안에서 별도의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동의는 민간조사업자와 의뢰인의 계약 체결시 민간조사업자가 각각의 고지 사항을 의뢰인에게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인 의뢰인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민간조사업자의 동의관련 설명의무조항의 신설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계약서, 동의서, 설명을 위해 작성된 서식은 반드시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교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서면은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표준화된 양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62) 제24조(민간조사업자의 의무) ⑨ 민간조사업자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와 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서면으로 조사내용을 의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출인 소재에 대한 조사내용은 가출인이 성인인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의뢰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63) 제29조(비밀누설금지) ① 민간조사업자이거나 민간조사업자이었던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뢰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민간조사업자의 사무원이거나 사무원이었던 자도 제1항과 같다.

2. 민간조사과정에 필요적 ‘조사계획 수립 및 고지’ 절차의 도입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민간조사업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요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민간조사업자(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뢰인 또는 제3자(정보주체)는 민간조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민간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조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

하지만 민간조사관련 법안의 업무범위는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으면서도 조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민간조사의 과정에 대해서도 의무조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민간조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 우선적으로 구체화되어 민간조사관련 법안에서 명시되어야 한다. 민간조사업자가 임의성을 전제로 하여 활용할 수 있는 조사방법은 <표 10> 민간조사의 방법와 같다.

<표 10> 민간조사의 방법

구분	내용
탐문/면담	피해품 및 대안대물적 소재파악 조사를 위한 관계자 확인
자료 협조	의뢰인의 임의 대리인으로서 조사관련 서류 수집
실지 조사	현장 방문을 통한 대안대물적 소재파악 조사
시료 채취	대안대물적 소재파악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요청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조사 요청
감정 의뢰	시료 채취에 의한 전문기관의 전문가 의견 확인

※ 자료: 임의조사 방법의 의견을 제시함.

또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예방하기 위해서 민간조사업자에게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고지하여 조사범위를 사전에 확정할 필요성도 있다. 조사계획서에는 계약 체결 이후 기초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자와 대상물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관련자를 특정하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조사 방법을 설정하여야 한다⁶⁴⁾. 이렇게 조사범위를 설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수집의 과잉 현상을 통제할 수 있고, 의뢰인에게 조사계획을 고지함으로써 조사의 충실성을 담보하여 민간조사관련 법안에서 명시하는 성실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기능도 보장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간조사업자에게 ‘조사계획 작성 및 고지’의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을 민간조사관련 법안에 신설하여야 한다.

3. 민간조사업자의 의무이행을 위한 정보주체 권리의 제한 근거 마련

64) 개인정보는 특정개인에 대한 ‘특정성’ 또는 ‘특정가능성’이 있을 때 개인정보로 인정된다(임규철, 2012: 237).

의뢰인 또는 제3자(정보주체)는 민간조사업자(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열람권(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제2항),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구권(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제1항·제2항),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권(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표 11> 정보주체 권리의 제한 사유를 제외하고 민간조사업자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열람권이나 개인정보의 정정요구권은 보장되어야 하나, 개인정보의 삭제요구권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권의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표 11> 정보주체 권리의 제한 사유

구분	내용
개인정보의 열람권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구권	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권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37조.

민간조사업자는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이나 조사완료가 된 경우에 조사 사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⁶⁵⁾. 따라서 민간조사업자가 제3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고 사실 확인을 한 경우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의뢰인에게 제출될 수 있다. 하지만 제3자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요구권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권을 행사하면 민간조사업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파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3자에 의하여 사실 확인된 조사내용은 의뢰인에게 제출될 수 없고 민간조사 제도 도입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변호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경우에 제3자의 진술은 민·형사상 다양한 법률관계를 변경시킬 수 있고 제3자는 참고인 또는 법정 증인이 될 수도 있는 유동적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삭제요구권이나 처리정지요구권을 행사하면 역시 제3자에 의해 확인된 사실은 이용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체계는 부분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해 규율되는 분리방식을 취하

고 있기 때문에 일반법의 지위를 갖는 개인정보보호법은 타 법령과 충돌이 불가피하다(황태정, 2009: 623). 따라서 제3자가 민간조사업자에게 개인정보의 삭제요구권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할 '특별한 절차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 민간조사관련 법안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민간조사업자가 제3자에게 정상적인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를 받아 사실 조사를 한 자료는 비밀문서로 취급하도록 하고⁶⁶⁾, 제3자가 개인정보의 삭제요구권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민간조사업자가 의뢰인에게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삭제요구권과 처리정지요구권의 행사를 일시 정지시키는 규정의 마련도 검토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V. 결론

본 논문은 민간조사과정에서 수집·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법안을 비교하여 업무범위와 조사과정을 살펴보고 민간조사와 개인정보보호법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민간조사업자가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동의 문제, 개인정보 수집의 정도, 정보주체의 지위와 권리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민간조사의 합리적인 개인정보처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민간조사법안에서 민간조사는 개인 또는 단체의 의뢰를 받은 민간조사업자가 인적·물적 소재 조사, 의뢰인의 피해 조사, 변호관련 사건에 대하여 광범위한 영역에 대하여 사실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조사업자의 조사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조사절차에 대하여 일반적 의무 규정을 통해 제한적인 절차를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민간조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의뢰인 또는 제3자의 개인정보를 기초로 자료 수집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한다.

민간조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적 조사방법을 통해 관련 정보를 처리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정보주체가 동의를 구분해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포괄동의를 금지된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민간조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민간조사의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구권,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권의 권리가 보장된다.

민간조사에서 합리적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민간조사업자가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동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 민간조사업자의 동의관련 설명의무조항과 계약서, 동의서, 설명을 위해 작성된 서식은 반드시 서면으로 의뢰

66) 이 경우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관리된다.

65) 민간보안산업법안 제24조 제9항에서 '민간조사업자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때와 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서면으로 조사내용을 의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민간조사업법안 제19조 제3항에서도 '민간조사업자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 또는 업무완료 시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에게 교부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어야 한다. 둘째, 계약 체결 이후 기초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자와 대상물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관련자를 특정하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 방법을 설정하는 조사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의뢰인에게 고지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셋째, 민간조사업자는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이나 조사완료가 된 경우에 조사 사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3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 사실 확인을 한 경우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의뢰인에게 제출될 수 있다. 하지만 제3자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요구권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권을 행사하면 민간조사업자는 의뢰인에게 조사내용제출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해지고 민간조사제도 역시 유명무실해진다. 따라서 민간조사업자가 조사내용 제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삭제요구권과 처리정지요구권의 행사를 일시 정지시키는 근거의 마련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2013.3.23.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서울: 2012년도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2012. 11. 2. 의안번호 1902389.
 길준규. 2012. 통합개인정보보호법과 효과적인 개인정보의 보호. 토지공법연구. 57: 213-234.
 김원중. 2006. 민간조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0(1): 53-72.
 김재광. 2012.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새로운 법적 문제. 강원법학. 36: 95-120.
 김준우, 소재선. 2012.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소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47(3): 43-80.
 고희석. 2011. 개인정보침해와 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법조. 60(10): 272-317.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13. 3. 19. 의안번호 1904137.
 박동균, 김태민. 2012. 미국 민간조사산업의 특징 및 함의.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4): 105-125.
 백윤철. 2009. 개인정보보호법(안)과 최근 입법동향 및 과제. 토지공법연구. 4(2): 657-679.
 손상철. 2011. 민간조사제도의 규제방안과 소관부처에 관한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7: 131-162.
 안동현. 2012. 공경비의 민영화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지. 1(1): 67-86.
 안영규. 2010. 민간조사업법 제정 방향에 관한 소고.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5: 73-107.
 윤중수. 2009.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관. 정보법학. 13(1): 179-209.
 이세환. 2012. 민간경비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4(2): 185-211.
 이성용. 2012. 민간조사 규제에 대한 법해석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하여. 치안정책연구. 26(1): 261-290.
 이주락, 최종윤. 2012.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를 위한 민간조사원 조사권의 한계 설정. 경찰학연구.

12(1): 125-146.
 이하섭. 2012. 외국사례를 통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4): 265-288.
 정규영. 2012. 시큐리티산업의 영역.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지. 1: 1-24.
 정준현. 2010.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필요성 및 방향. 성균관법학. 22(3): 565-592.
 전웅준. 2013. 개인정보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적절성.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 161-171.
 조성구, 김태민. 2012. 민간조사업의 도입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4(2): 241-267.
 조성구, 이주락, 김동제. 2012. 민간조사업체의 증가 원인과 문제점.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3): 249-270.
 최석오. 2012. 경비업법상 직무범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48: 99-117.
 한상철. 2009. 민간조사제도의 이해를 위한 개괄적 소고. 교정복지연구. 17: 93-120.
 함인선. 2012. EU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33: 5-38.
 행정안전위원회. 2013.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1-35.
 황태정. 2009.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입법체계 검토. 형사정책연구. 77: 613-64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61201031127295001>

申寬祐: 동국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논문제목: 정신장애범죄자의 형사책임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2010)를 취득하고, 현재 신경대학교 법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육군 헌병과 경찰청 보안국에서 정보·보안, 범죄분석, 조사업무를 하였고 경비지도사와 임상심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형사정책, 범죄수사학, 범죄심리학, 수사심리학, 민간조사 영역이며, 한국범죄심리학회 이사, 한국자치경찰학회 연구이사,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노출증과 범죄(2012)”, “실정법상 정신감정 제도의 고찰(2011)” 등이 있다(sunnyblues@paran.com).

투 고 일: 2013년 05월 24일
 수 정 일: 2013년 07월 12일
 게재확정일: 2013년 07월 18일

A Study on Institu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 Focusing on Reasonable Proceeding about Personal Inform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

Kwan Woo Sh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reasonable plan f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s collection-utilization-offer in the course of private investigation. To do this, Compare legislation related to private investigation looks at scope of work and investigation procedure, think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Investig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Private Investigation Procedure of Personal Information's consent, the degree of th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tatus and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examined, Through this, reasonable plan f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was envisioned. For reasonable process of Personal Information, The following methods should be taken. First, At least for the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bill should write in Specific method of consent, If the contract the private operator have to explain about consent, to give a contract documents, consent documents, documents for explanation by the private operator should be included in the bill. Second, after contract through basic Investigation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s obligations for investigation plan writing and Notifications should be included in the bill. Third,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 in order to submit a Investigation report, to limit Information subject's the right to request deletion and to request prohibition of processing, Legal basis is needed

Key words: 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rivate investigation procedures.